

##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통합모집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 본 공고는 **舊 자율형·표준형 컨설팅 지원사업의 통합 공고문**입니다.
- ※ **신청양식 및 선정절차(신청접수→사전진단→매칭추천→수행계획서 작성) 등이 변경되었으니 숙지**바랍니다.

### 【 '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 수요자 맞춤형으로 '23년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개편

구 분		< 기존 사업 > 2022년		< 개편 후 > 2023년
①신청창구 통합		표준형, 자율형(공동형, 지속성장형 등) 등 유형별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	<b>유형 구분 없이,</b>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b>통합모집공고로 간편하게 신청</b> <small>* 단, 협업활성화 유형은 별도 공고 예정</small>
②사전진단 확대		표준형 신청기업 등 일부만 사전진단 실시	⇒	<b>모든 신청기업 대상</b> 사전진단 <b>"무료" 제공</b>
③추천 매칭 지원	시기	신청 전, 컨설팅기관을 탐색하고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율매칭 방식	⇒	수행계획서 없이 신청만 하면, 기업에 <b>적합한 컨설턴트(기관)를</b> <b>추천</b> 해드리는 <b>추천매칭</b> 지원 <small>* 신청서에 <b>희망 컨설턴트(기관)를 기재</b> <b>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매칭함</b></small>
	방식	컨설팅기관 → 1:1 매칭	⇒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기관 → 1:多 매칭 가능
④컨설팅분야 및 전문가 풀 확장		경영 중심 지정분야에 대해서만 컨설팅 지원	⇒	<b>전 분야(18개 세부분야)로 지원 확대</b> <b>+ 분야별 컨설턴트(기관) 풀 확장</b>
⑤선정절차 일원화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	사전진단 → 서면검토(필요시 대면 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 '23년 사업 개편 관련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 **[참고1]** 확인

#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서 자립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전문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공고일 ~ '23.10.3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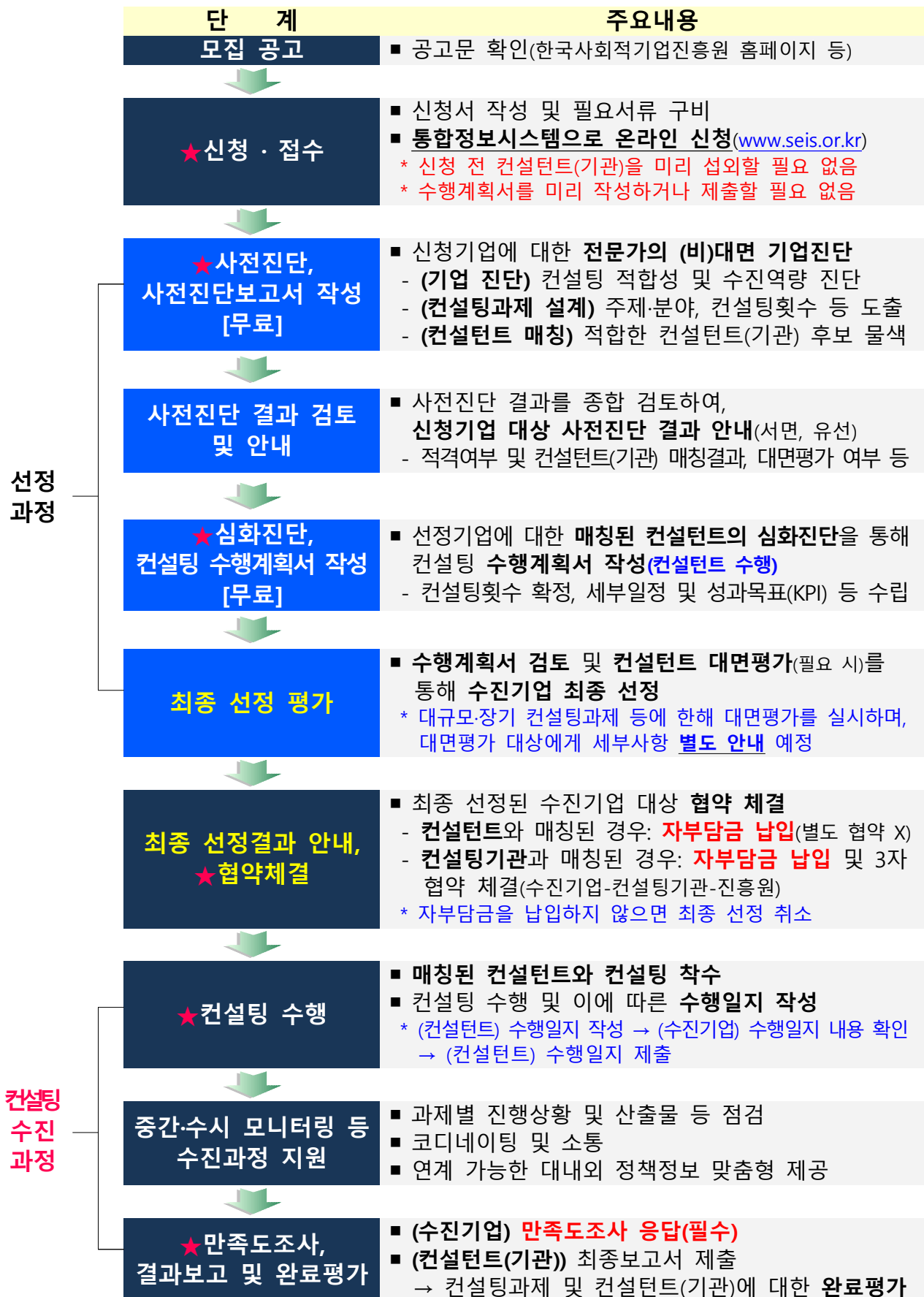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 \* 1개소 단독 신청 또는 2개소 이상 공동으로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예비)사회적기업 100개사 내외, 총 950백만원 내외
- (지원횟수) 기업 당 연 1회, (한도)누적 총 5회까지 지원
  - \* 횟수 산정대상 등 세부내용은 “(별첨)[붙임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지침” 확인 필요
- (지원제외)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항 목

1. 신청한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2. 당해 연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경우
3.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를 초과한 기업 (\* 기업 당 누적 지원횟수 최대 5회)
4.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과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경우
5.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6.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7. 타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8.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라.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마. 단, 가~라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않음

□ 세부절차(★: 신청(수진)기업 참여 필요 부분)



## 2 지원내용

### 1 [선정과정을 통한] 기업진단 지원

#### ① 사전진단

- 모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전문가가 사전진단 실시
  - (기업 진단) 신청기업의 현안 분석, 컨설팅 적합성 및 수진역량 (예: 실무인력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 (컨설팅과제 설계) 문제 상황에 적합한 컨설팅 분야, 범위, 기간, 투입일수 등을 도출하여 컨설팅과제 설계를 위한 준비단계 지원
  - (컨설턴트 매칭) 신청 시 제출한 희망 컨설턴트(기관)를 고려해 적합한 컨설턴트 후보 도출
- \* 단, 신청 시 작성하신 컨설팅 분야, 투입일수, 희망 컨설턴트(기관) 등 세부내용은 사전진단 및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대면평가 여부, 적합한 컨설턴트(기관) 매칭방안 등 검토하여 신청기업별 결과 안내(서면, 유선 등)

#### ② 심화진단(수행계획 수립)

- 적격기업을 대상으로 매칭된 컨설턴트(기관)가 심화진단 실시
  - (컨설팅과제 고도화) 기업상황 및 문제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컨설팅 성과목표(KPI) 도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일정 및 적정한 투입일수, 수행방식 등을 협의하여 확정
  - (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턴트는 위 내용을 토대로 컨설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2 전문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경영문제 해결 또는 경쟁력·역량 강화 지원
- (지원분야) ESG, 기술개발, 판로 고도화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18개의 세부분야 중 택 1

\* 사전진단 결과 2개 이상의 분야에 대한 지원 혹은 2인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복합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별도의 컨설팅기관 탐색과정 없이, **추천매칭 및 다양한 주제/분야별 컨설턴트(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9페이지 '컨설턴트(기관) 조회방법' 참고)

### < 전문컨설팅 지원 분야 및 예시 >

※ 컨설팅 분야는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 예정**

대분류	세부분야 (택1)	세분류	컨설팅 주제 예시
1.1. 전략 기획	1.1. 사업기획, 전략, 소셜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셜미션 수립·점검·확산</li> <li>▪ 사회적성과 관리·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셜임팩트 측정지표 개발 및 고도화</li> <li>▪ 사회적성과/임팩트 측정 및 보고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의견수렴</li> <li>▪ 지역사회정부 등 소통협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정부 등 협업전략 개발, 액션플랜 수립</li> <li>▪ 지배구조 개선(의사결정 구조·체계 포함)</li> <li>▪ 사회적경제기업 등과의 (동종·이종)협업전략, 공동사업, 네트워크·협업체계 구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li> <li>▪ 사업성과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션·비전·리더십, 중장기 전략 수립</li> <li>▪ 경영진단, 벤치마킹, 시장조사</li> <li>▪ BM개발(전사차원), 제휴협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li> <li>▪ 성과관리체계·사업구조 개선, 재창업·사업전환 전략, 프랜차이즈 사업 전략</li> </ul>
1.2. 전사 인프라	1.2.1. 자금·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출금 관리, 자금계획·관리·운용</li> <li>▪ 정책자금 및 사업 연계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분석·개선 전략 및 실행방안</li> <li>▪ 자금조달, 투자연계 및 자원개발(IR전략, 대응지원 등)</li> <li>▪ 사회적금융 자금조달방안, SIB·클라우드펀딩 전략 등</li> <li>▪ 중앙·지자체 등 정부정책 자금·기금 연계, 제안 전략</li> </ul>
	1.2.2. 회계·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장·결산·회계 감사 수감</li> <li>▪ 부가세·법인세 등 세무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시스템 적용, 대응 및 전략 수립 지원</li> <li>▪ 자체 회계·세무 매뉴얼 제작 및 역량 강화 지원</li> </ul>
	1.2.3.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계약체결</li> <li>▪ 법제도/소송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협약 관련 검토</li> <li>▪ 각종 규제·제도 변화 대응 지원</li> </ul>
	1.2.4. 정보화· 디지털전환· 안전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기획/설계/운영</li> <li>▪ 안전·보건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전환·IT 전략 수립 및 활용 자문, 각종 (온라인)시스템 설계 및 구축</li> <li>* 디지털전환은 세부내용에 따라 사업 기획 및 전략, 마케팅, 서비스·상품 개발 및 개선으로 분류될 수 있음</li> <li>▪ 안전·보건 진단 및 개선 컨설팅</li> </ul>
1.3. 인적자 원관리 개발	1.3. 인사·노무· 조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채용·관리</li> <li>▪ 노무·급여·복리후생</li> <li>▪ 교육·훈련·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법 등 관련 법제도 적용, 대응 지원, 갈등 관리</li> <li>▪ 노무이슈(취업규칙 등), 인사·노무전략, 구조조정</li> <li>▪ 기업문화·조직구조 혁신, 직무분석·성과평가, 보상체계</li> <li>▪ 공동훈련 프로그램 설계·관리, 국가·민간자격증 설계·등록, 각종 교육훈련체계 마련, 매뉴얼·가이드 제작</li> </ul>

대분류	세부분야 (택1)	세분류	컨설팅 주제 예시
1.4. 기술 개발 (R&D)	1.4.1. 서비스·상품개발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서비스·상품 개발</li> <li>기존 서비스·상품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겟고객·시장 분석, 아이템 발굴, 신규 서비스·상품 기획</li> <li>시제품 제작 지원, 디자인·설계 관련 자문, 제품시험</li> <li>기술사업화 기획[부문차원], 디지털전환, 시범 서비스 개발·적용, 공정 개선</li> </ul>
	1.4.2. 인증·심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국가·민간 인증 획득·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인증] KS마크, HACCP, ISO 등 인증 획득</li> <li>[ESG/탄소중립] 수준진단·평가, 인증 획득</li> </ul>
	1.4.3. 지식 재산권·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권 획득·유지</li> <li>R&amp;D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li> <li>기술이전개발 및 도입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상표/국외/실용신안/디자인출원 등</li> <li>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최산설비 첨단프로세스 개발적용</li> <li>선행기술 조사, 미래시장환경 분석, IP이슈 분석 등 IP·기술개발 전략, R&amp;D 전략수립</li> <li>기술가치평가·기술거래·기술이전</li> </ul>
1.5. 조달 활동	1.5. 조달/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비품 등 조달 및 관리</li> <li>구매·조달계약 체결, 집행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구매, 조달 전략 수립</li> <li>신규 공급처 개발 등 공급사슬 관리 및 최적화</li> <li>자산·비품으로서 공간·사육 확보 및 운영, 관리 전략(자산화 전략 포함)</li> </ul>
2.1. 원재료 조달	2.1. 원재료 조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부품 구입 및 배송</li> <li>원재료·부품 저장, 투입 준비 및 전처리</li> <li>원재료·부품 재고관리 및 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입·관리 최적화</li> <li>원재료 저장 및 관리 개선 자문</li> <li>[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 준비·최적화·점검 및 재훈련</li> </ul>
2.2. 생산·제조·공정·운영	2.2.1. 생산관리 (생산·설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의 가공·조립·포장</li> <li>생산설비 운영관리 및 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관리 및 기술지도</li> <li>물량 및 설비 최적화, 생산관리, 제조혁신</li> </ul>
	2.2.2.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스트, 불량처리 및 품질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관리 및 개선, 공정설계/개선, 에너지 효율화</li> <li>고객응대·소통·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설계·진단·개선</li> </ul>
2.3. 물류·유통	2.3. 물류 유통·재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성품 재고 관리, 저장</li> <li>주문서 접수 및 처리</li> <li>최종포장 완성품 출하·배송·납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고관리 시스템 구축·개선, 최소주문수량(MOQ)설계</li> <li>제3자 물류, 풀필먼트 등 설계·개선 등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li> </ul>
2.4. 마케팅·판매	2.4.1. 브랜딩·디자인·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고·홍보, 디자인 전략</li> <li>브랜딩·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실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랜딩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슬로건, 제품포장·디자인 점포 개선 및 간판인테리어</li> <li>[마케팅/홍보] 마케팅전략, SNS·디지털마케팅, VMD(Visual Merchandiser), 그로스해킹, 클라우드펀딩</li> <li>가격전략(원가분석 등)</li> </ul>
	2.4.2. 영업·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촉 및 영업전략 수립·실행</li> <li>점포 및 소비자 접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판로 개척, 판촉 전략 수립 및 실행</li> <li>[판로개척_온라인몰 입점] 종합·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입점지원, 판촉전략</li> <li>[판로개척_오프라인몰 입점]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입점지원, 판촉전략</li> <li>[해외진출]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략, 서류 준비 지원 등</li> </ul>
	2.4.3. 영업·판로개척 (공공시장,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채널개척, 고객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장 진출/확대] 공공시장 진입전략, 나라장터·벤처나라·혁신장터·S2B 등록·입점, 제안 전략</li> <li>[민간위탁/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요건 충족 등 사전준비, 등록·유지 지원)</li> </ul>
2.5. 서비스·고객 만족	2.5. A/S, 고객 및 이해관계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설치 및 이용지원</li> <li>사후관리·피드백</li> <li>고객관계관리, 고객가치제고</li> <li>주민 이해관계자 가치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접점 관리 전략, 사후관리 프로세스 설계·최적화</li> <li>서비스디자인, 고객만족 서비스전략, 고객가치 제고 전략</li> <li>고객관리시스템(CRM) 설계, 운영자문</li> <li>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가치제고 전략, 운영자문</li> </ul>
3 기타	3. 기타	위 분류에 속하지 않거나, 구분이 어려운 주제	

### 3 타 지원사업 연계 지원

- (맞춤정보 제공) 전문컨설팅 수행과정 또는 이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정부부처 사업 등 적합한 지원사업 관련 자료 공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업 성장 동력 제공
- (사업개발비 신청 연계 지원) 전문컨설팅 수진 이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발급
  -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최근 3년 이내 수행 건에 대하여 전문컨설팅 결과확인서 발급

### 4 전문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제한 없음(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원 이내 지원)
  - 컨설팅 횟수(최소 2회 이상) 및 매칭되는 컨설턴트의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 사전진단, 선정평가 등을 통해 지원금액 및 자부담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부담금) 확정된 컨설팅 총 사업비의 10~40%이내(기업 자부담)
    - < 수진기업 자부담금 산출기준 >

총 사업비	자부담 비율	기업 최대부담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20%)}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50만원	{2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30%)}
2,500만원 초과		산출식에 따름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 × 40%)}

※ 단, 긴급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경영상 애로가 발생한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에 1회 기업부담금 면제 가능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시·군·구·읍·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간접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또는 지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 그밖에 진흥원장 또는 전문컨설팅 평가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할 경우

### 3 신청 및 선정방법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공고일 ~ 사업기간(23.10.31.(화)) 내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별첨)붙임2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고

☞ 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www.seis.or.kr](http://www.seis.or.kr)

- (신청서류) 통합정보시스템에 권장 형식(pdf, hwp 등)으로 업로드

< 신청서류 안내 >

연번	구분	신청서류	비 고
1	필수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첨 【서식1】 작성
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서식2-1】 작성 (대표자 서명, 법인(사용)인감 날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서식2-2】 작성 (대표자, 총괄책임자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5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6	해당 시	(해당자에 한함)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사본	본 공고문 13페이지 우대가점 “3점”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 【서식3】 작성
7		(2개소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참여기업 명단	별첨 【서식4】 작성 후 첨부 (hwp 파일 권장)
8	선택	기업 및 사업 소개자료	포트폴리오 또는 연차/경영보고서 등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가점은 인정되지 않음(사후제출 불가)

\*\* 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압축(zip)하여 첨부



- (컨설턴트(기관) 조회방법) ①통합정보시스템(SEIS) → ②홈페이지 좌측 '전문컨설팅' → ③전문컨설팅 공지사항(컨설턴트 조회 시)/전문컨설팅 기관 안내(컨설팅기관 조회 시)

\* 신청서에 희망 컨설턴트(기관)를 기재할 수 있으며, 매칭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우대요건) 아래 요건에 부합할 경우 가점 부여[최대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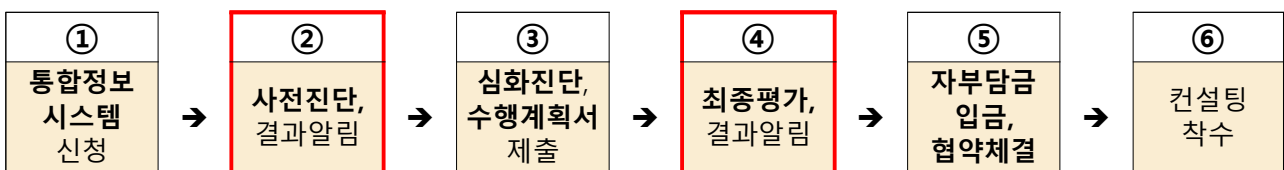
\* 단, 2개소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가점 부여하지 않음

※ 각 가점별 증빙서류는 "[참고2](#) 우대요건 증빙서류 안내" 확인

가점	우대요건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지원사업에 신청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li> <li>■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인 신청기업</li> <li>■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li> <li>■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지 1년 이내의 신청기업</li> </ul>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기본·확장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li> <li>■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li> <li>■ 본 사업 수진 이력이 없는 신청기업</li> <li>■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고하는 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신청기업</li> </ul>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li> </ul>

## □ 선정방법

### < 선정절차 >



-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 적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위 ②번)

- (최종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수행계획서(위 ③번)를 평가하여 수진기업 최종 선정(위 ④번)

\* 대규모·장기 컨설팅과제 등에 한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대면평가 여부, 평가 세부사항 등은 대면평가 대상에게 별도 (사전)안내 예정

\*\* 세부 평가기준은 "[참고3](#)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선정 평가항목" 확인

## 4 선정 후 사업과정

### □ 계약체결

- 최종 선정 후, 수진기업은 자부담금 납입 및 (필요시)협약 체결
  - \* 자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
  - \*\* 자부담금은 7페이지 “☐전문컨설팅 비용지원” 참고(향후 기업별 안내 예정)
- (컨설턴트와 매칭된 경우) 운영지원기관에 자부담금 납입
  - \* 위 경우 지침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나, 필요 시 체결할 수 있음
- (컨설팅기관과 매칭된 경우) 매칭된 컨설팅기관에 자부담금 납입 및 3자 협약(수진기업-컨설팅기관-진흥원) 체결

### □ 역량강화 교육 등 참여

- 원활한 컨설팅 수진 및 효과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수진기업 및 매칭된 컨설턴트(기관) 대상 **역량 강화 교육**과 사업 절차 등 행정사항 안내를 위한 워크숍 실시 예정

### □ 컨설팅 착수 및 수행

- 수진기업은 매칭된 컨설턴트(기관)로부터 컨설팅을 수진하고, 이에 따라 컨설턴트가 작성한 **수행일지와 산출물을 확인**, 순차적으로 활용·실무에 적용하며 컨설팅 성과 도출

### □ 만족도조사 참여 및 후속지원 연계(컨설팅 완료 후)

- 컨설팅 완료 후 수진기업은 **만족도조사** 등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컨설턴트가 제작한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확인**
  - \* 컨설팅 수행은 **'23.11.10.(금)까지** 완수하여야 함
- 후속지원 필요 시, 제공 받은 **맞춤형 정책정보를 활용**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시, **결과확인서 발급 요청**(7페이지 참고)

## 5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신청내역 검토결과 및 평가일정 등은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며, 신청기업의 미확인, 연락두절, 일정착오로 인한 평가 불응 시 신청포기로 간주함
- 공고내용 미숙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오기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함
- 신청서, 증빙서류 등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자격 미충족 등) 신청(선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최종선정 후 진흥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차 순위 기업에 기회 부여
- 본 사업 참여기업은 추후 진흥원이 실시하는 '이력·성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구 분	기 관 명	연 락 처
신청, 사전진단 등 절차	한국경영인증원 사회적기업컨설팅 운영사무국	02-6309-9080, 9050 (메일: seo2023@ikmr.co.kr)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로그인 오류 등)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사업내용 관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031-697-7848, 7846, 7844

# 참고1

##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개편사항

### < 2023년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개편 방향 >

2022년			⇒	2023년	
표준형	자율형			사업유형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일반 지원분야" 으로 통칭
	지속 성장형	공동형	협업 활성화		
• 컨설팅	• 컨설팅		• 컨설팅 + <b>사업비</b>	• 컨설팅	• 컨설팅+ <b>사업비</b>
• 1개소	• 1개소	• 2개소 이상	• 2개소 이상	• 무관(1개소 또는 2개소 이상)	• 3개소 이상
• 연중상시	• 연 3회 ("자율형"으로 통칭하여 공고)		• 연 3회	• 연중상시	• 별도공고
• 사전진단 후 매칭	• 자율매칭			• 사전진단 후 매칭	• 컨설턴트(기관) pool 활용 매칭
• 사전진단 • 평가 위원회 심의	• 평가위원회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 사전진단 • 평가위원회 심의 (필요시 대면평가)	• 대면평가 * 서면절차 추가 가능 • 평가위원회 심의
• 수진기업 →운영 지원기관 자부담금 납입 (협약 같음)	• 수진기업→컨설팅기관: 자부담금 납입 • 수진기업-컨설팅기관- 진흥원 3자 협약 체결		• 수진기업→ 운영지원기관: 자부담금 납입 (협약 같음)	* 매칭방식에 따라 상이	
				컨설턴트 매칭 시	컨설팅기관 매칭 시
				• 수진기업→ 컨설팅기관: 자부담금 납입 • 수진기업-컨설팅 기관-진흥원 3자 협약 체결	

## 참고2

## 우대요건 증빙서류 안내

가점	우대요건	증빙서류
1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 지원 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	금융 지원사업의 명칭이나 지원대상, 신청 기업명이 확인되는 사업 참여 협약서, 선정 공고 또는 안내 내용, 제출한 신청서 등
	직전년도 매출액 15억 이상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직전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재 유급근로자 수 3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 신청시점 근로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1년 이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인증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점	직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기본·확장공시) 참여	체크 시 진흥원에서 집계 (SEIS의 경영공시 신청목록 화면 캡처 권장)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 포상, 공모에 선정 되는 등 우수성 인정 기업	기관명 및 신청기업명이 확인되는 상패, 공고문, 선정 안내문 등
	본 사업 수진 이력이 없는 신청기업	체크 시 진흥원에서 집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고하는 SVI 측정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기업	체크 시 진흥원에서 집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 공고의 SVI 측정기업 모집에 참여한 기업에 한함)
3점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 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별첨 【서식3】 과제발굴확인서를 작성하여 당시 교육/컨설팅/멘토링을 주관했던 협력 기관(해당사업 담당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사본 파일 첨부 (협력기관 직인을 포함하여 pdf 사본 권고)

### 참고3

##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선정 평가항목

#### ○ 사전진단 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컨설팅 필요성	문제인식: 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문제파악: 현재 당면한 구체적인 어려움(현재 상태)
	원인분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제해결 노력도: 해결과정 및 그에 따른 결과
	문제비교: 본 문제 외에 당면한 다른 시급한 문제
	문제파급력: 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이유
컨설팅 효과성	목표설정: 수행목표 및 도달수준의 명확성
	기대효과: 컨설팅 수행 후 예상되는 변화 및 기대하는 바
	활용도: 컨설팅 결과 활용방안, 활용을 위한 필요요건
	사회적 영향력: 컨설팅 결과가 수진기업의 소셜미션, 소셜임팩트 강화에 기여하는지
	사회적 영향력: 컨설팅 결과가 사회적가치 제고, 디지털 전환, 저탄소 등 정책 추진방향과 부합하는지
수행의 적정성	인력보유: 전담인력 보유 여부
	노력정도: 수진기업 전담자가 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 ○ 대면평가 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행의지	컨설팅 지원 사유의 명확성
	대표자(총괄책임자)의 컨설팅 수행의지의 확고성
	컨설팅 결과물 활용 및 도출방안 실행 의지
현안 분석 및 목표 설정	컨설팅 목표의 타당성(사업과의 연관성 등)
	컨설팅 목표의 구체성
	기업 현안(어려움, 문제점 등)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수행계획 및 추진내용	컨설팅 과업 범위 및 수행 단계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계획 대비 사업예산(투입일) 산정의 타당성
	컨설팅 수행 후 성과목표(KPI) 수립내용의 타당성
	컨설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컨설팅 수행 관리 전략의 명확성
	제시한 컨설팅 방법론 및 개선방향의 효과성
수행 후 실현가능성	사업연계방안 및 컨설팅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절성
	컨설팅 결과물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의 구체성
가점 부여 (공동신청기업은 미적용)	(진흥원에서 우대요건 증빙서류 확인 후 집계)